



# 보험료 카드결제 의무화 법안발의 문제점

임준환 선임연구위원

## 요약

■ 최근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. 그런데 동 발의안은 보험회사의 신용카드납 인정 여부에 관해 보험회사에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는 현 제도를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. 현금 및 자동이체를 통한 결제수단은 보험계약자의 현금성 자산인데 반해 신용카드는 보험계약자의 부채수단이므로 이에 대한 인수 여부는 신용카드 인수자의 자율적 동의하에서만 가능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. 또한 이처럼 보험회사의 자율성을 무시한 발의안은 법안의 취지와는 달리 보험료 인상 등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다. 따라서 보험료에 대한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현금과 카드납간의 선택 여부는 보험업법 개정보다는 이해관계자인 보험계약자, 보험회사, 그리고 신용카드회사간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만 한다.

■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되면서 처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.

-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신설조항을 포함하는 보험업법 개정이 추진중(보험업법 제 193조의 2 신설).<sup>1)</sup>
- 금번 발의된 보험료 신용카드납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은 형식적으로 임의조항(“--납부대행기관을 통해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할 수 ---”)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카드결제를 강제(의무화)하는 것임.

1) 개정안에 따르면 제193조의 2(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 납부) ①보험계약자는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신용카드,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, 전자결제 등(이하 이 조에서 “신용카드” 이라 한다)으로 납부할 수 있다. ②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한다. ③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,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.

■ 이러한 개정안 발의 배경에는 주요 생명보험회사가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한다는 고객 민원을 반영하는 것이나 이러한 민원제기는 부당한 고객 차별화라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.

- 보험료 납입 중 신용카드결제 비중을 살펴보면 생명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는데, 중소형사가 대형사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임.
  - 중소형사는 대형사에 비해 판매채널의 열세를 극복하고자 전화, TV 등의 채널을 활용하면서 신용카드납을 허용하였고 이의 비중이 높음.
- 생명보험사의 보험료 신용카드납 허용 여부는 각 보험사의 경영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, 이를 일부 보험계약자들이 부당한 고객 차별화라는 오해하고 있음.

■ 민원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납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.

- 첫째, 지불결제수단으로 보험료의 신용카드납을 법으로 강제하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음.
  - 중앙은행이 발행한 법정통화만이 모든 거래에 지급결제수단이다라는 중앙은행법을 제외하고는 결제수단을 강제화하는 법은 세계 어디에도 없음.
  - 이런 의미에서 법정통화(현금)만이 즉각적이고 최종적인 결제수단(finality of settlement)
- 둘째, 신용카드란 이용자의 신용을 담보로 신용카드회사가 발행한 채무증서로 물품의 구입, 용역의 제공에 이용되는 사적 결제수단이므로 현금 및 자동이체에 비해 즉각적인 결제수단이 될 수 없음.
  - 보험료의 신용카드납 이후 영업일 3일에서 7일 이후에야 비로소 현금화가 가능하므로 동 기간 동안 보험회사는 채무불이행위험에 노출되므로 자동이체가 신용카드에 비해 보다 공신력 있는 지급결제수단임.
- 셋째, 자동이체를 통한 결제수단은 보험계약자의 현금성 자산인데 반해 신용카드는 보험계약자의 부채수단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금융거래를 결제하는 것의 허용 여부는 신용카드 인수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함.
  - 심지어 금융거래의 주요 결제수단인 자동이체(은행예금)마저도 거래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서만 결제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.

■ 사적 결제수단인 신용카드가 현금 및 자동이체가 갖는 공적 결제수단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카드발행자와 카드인수자의 자발적인 합의가 필요하며, 이러한 측면에서 보험계약에 대한 신용카

드 결제의 허용 여부는 신용카드사와 보험회사간의 자발적인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.

■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 중 보험료 납입에 한해 신용카드를 현금과 동일한 결제수단으로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은 무엇보다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, 앞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 이외 높은 카드 수수료율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에 대한 부담만을 높일 것임.

- 첫째, 카드납의무화는 현재의 높은 수수료(3%)가 보험료에 그대로 반영되어 보험계약자들에게 부담을 초래하는 한편, 신용카드사의 이익만을 늘리는 등 법 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.
- 둘째, 카드납의무화는 기존의 현금결제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현금결제를 기피하고 카드납 결제를 선호하여 더 많은 수수료가 보험료에 전가되는 악순환이 발생

■ 결론적으로 결제수단으로서 현금과 신용카드납의 선택 여부는 보험업법 개정보다는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 결정될 필요가 있음.

- 일률적으로 보험료 카드납을 강제하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보험사와 신용카드사간 사적자치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. [kiri](#)